

2002. 12. 17~ 12. 18
제207회 정례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1. 세입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합 계	1,915,810,880	100.0	1,795,104,844	100.0	120,706,036	6.7
지방세수입	284,291,000	14.8	264,291,000	14.7	20,000,000	7.6
세 외 수입	416,586,418	21.7	295,537,199	16.4	121,049,219	41.0
경상적세외수입	36,567,543	1.9	36,578,913	2.0	△11,370	△0.0
임시적세외수입	380,018,875	19.8	258,958,268	14.4	121,060,589	46.7
지방교부세	261,467,908	13.7	261,254,908	14.6	213,000	0.1
지방양여금	98,908,461	5.2	98,908,461	5.5	-	-
보 조 금	777,557,093	40.6	798,113,276	44.5	△20,556,183	△2.6
지 방 채	77,000,000	4.0	77,000,000	4.3	-	-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합 계	1,491,399,017	100.0	1,482,208,907	100.0	9,190,110	0.6
지방세수입	284,291,000	19.1	264,291,000	17.8	20,000,000	7.6
세 외 수입	103,974,606	7.0	94,441,313	6.4	9,533,293	10.1
경상적세외수입	15,721,499	1.1	15,732,869	1.1	△11,370	△0.1
임시적세외수입	88,253,107	5.9	78,708,444	5.3	9,544,663	12.1
지방교부세	261,467,908	17.5	261,254,908	17.6	213,000	0.1
지방양여금	98,908,461	6.6	98,908,461	6.7	-	-
보 조 금	707,757,042	47.5	728,313,225	49.1	△20,556,183	△2.8
지 방 채	35,000,000	2.3	35,000,000	2.4	-	-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천 951억 484만 4천원 대비 6.7%인 1천 207억 603만 6천원이 증액된 1조 9천 158억 1천 88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천 822억 890만 7천원 대비 0.6%인 91억 9천 11만원이 증액된 1조 4천 913억 9천 901만 7천원 규모임.

다. 검토내역 및 의견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고, 보조금을 감액 제상한 것으로

○ 증감된 내용은

- | | | |
|---------|-------------------|------------|
| • 지방세수입 | 200억원 | (7.6%) |
| • 세외수입 | 95억 3천 329만 3천원 | (10.1%) |
| • 지방교부세 | 2억 1천 300만원 | (0.1%) |
| • 보조금 | △205억 5천 618만 3천원 | (△2.8%)이며, |

○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취득세 98억 2천 5백만원, 등록세 101억 7천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건설본부의 중기대여 사용료가 1천 137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제 IT교육생 시설사용료가 1억 9천 740만원 감액되었으나,
분수국유림 임목매각수입의 신규계상과 학교용지부담금, 중소기업자금 운용수익이 증액 계상되어 전반적으로 95억 4천 46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방교부세는 2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의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지원 5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9억 3천 9백만원,
청원IC-부용간 도로확포장 1억원,
증평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1억원이 증액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10억 3천만원,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9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보조금은 각 부처별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205억 5천 618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 자주재원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사업의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서,

사항별설명서

9쪽 지방세 징수전망액 추계분석내용,

10쪽 분수 국유림 임목매각대금을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한 사유

10쪽 국제 IT교육생 시설사용료 잡수입 1억 9천 740만원 전액감액,

11쪽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지방교부세 감액 10억 3천만원,

16쪽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국고보조금 감액 227억 6천 8백만원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가.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합 계	310,334,764	100.0	306,810,525	100.0	3,524,239	1.1
인 건 비	29,190,590	9.4	29,027,590	9.5	163,000	0.6
물 건 비	23,646,239	7.6	23,765,191	7.7	△118,952	△0.5
이 전 경 비	118,233,967	38.1	111,556,776	36.4	6,677,191	6.0
자 본 지 출	35,344,831	11.4	35,802,269	11.7	△457,438	△1.3
용자및출자	-		-		-	
보 전 재 원	851,620	0.3	851,620	0.3	0	0
내 부 거 래	89,829,459	28.9	90,242,867	29.4	△413,408	△0.5
예비비및기타	13,238,058	4.3	15,564,212	5.1	△2,326,154	△14.9

나. 실·국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합 계	310,334,764	100.0	306,810,525	100.0	3,524,239	1.1
자치행정국	184,908,686	59.6	179,084,880	58.4	5,823,806	3.3
공 보 관 실	2,188,234	0.7	2,188,234	0.7	0	0
총 무 과	14,810,596	4.8	14,780,596	4.8	30,000	0.2
감 사 관 실	156,140	0.1	156,140	0.1	0	0
기 획 관 리 실	66,244,560	21.3	69,019,233	22.5	△2,774,673	△4.0
증평출장소	42,026,548	13.5	41,581,442	13.6	445,106	1.1

다. 검토내역 및 의견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천 103억 3천 47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천 68억 1천 52만 5천원 보다 1.1%인 35억 2천 423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1조 4천 913억 9천 901만 7천원 대비 20.8%의 비율을 점하고 있음.

-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58억 2천 380만 6천원이 증액된 1천 849억 868만 6천원 규모이며

- 증감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집행잔액 14억 281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시·군 재정보전금 81억 8천 209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7천 43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10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시스템 도입비 4천 2백만원은 행정자치부 협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음.

-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선거경비의 감액과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의 증액,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